

인천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7나62474(본소), 2017나62481(반소) 판결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소유권이전등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피 항소인 1. B

2. C

3. D

4. E

변론 종결 2018. 5. 11

판결 선고 2018. 6. 1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7. 20. 선고 2016가단104717(본소),
2016가단113315(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김포시 F 임야 3, 471㎡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8㎡ 지상에 설치된 분묘 1기를 철거하고, G 과수원 4,538㎡ 중 별지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4㎡ 지상에 설치된 분묘 3기를 철거하고, 위 (가)부분, (나)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93,520원 및 2016. 4. 13.부터 (가)부분, (나)부분 토지 인도 완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가)부분 토지에 대하여는 월 40,687원, (나)부분 토지에 대하여는 월 73,91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원고는 김포시 F 임야 3, 471㎡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8㎡ 및 G 과수원 4,538㎡ 중 별지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14㎡ 중 피고 B에게 3/9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에게 각 2/9지분에 관하여 각 2014. 5. 2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봐도 제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김홍준 판사 양우석 판사 조아람

별지